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2. 5.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복지정책과장)
- 제출일자: 2026. 1. 21.(수)
- 회부일자: 2026. 1. 22.(목)
- 상정 및 의결: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6. 2. 3.)

## 2. 개정이유

- 국가를 위해 헌신·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·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·지원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‘정의’ 규정의 각 호를 법령 조문으로 명시(안 제2조)
-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 증액(안 제4조제2호)
  - (현행) 10만원 → (개정) 20만원
- 지급신청서 제출 기한 연장(안 제5조제2항)
  - (현행) 6개월 → (개정) 1년

## 4. 관계법령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‘10만원’에서 ‘20만원’으로 증액하고 신청기한을 ‘6개월’에서 ‘1년’으로 연장하며, 안 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 ‘정의’를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그 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, 다만 안 제4조의 ‘사망위로금’ 지급과 관련하여 ‘사망일 당시 주민등록 여부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수정의견  
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 개정안·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지원사업)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삭 제</p> <p>2. <u>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</u></p>	<p>제4조(지원사업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<u>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</u></p>

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**7. 심사결과: 수정가결**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6·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”을 “참전유공자를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”로, “주민등록을 두고”를 “주민등록이 되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이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“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”을 “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

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6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장제”를 “장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사망자부터 적용한다.



인

3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
4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

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
5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

3. 삭제

4. 삭제

5. 삭제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---  
-----  
-----  
-----대구광역시달서구-----  
주민등록이 되어-----  
-----  
-----국가보훈부장관이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

3. 삭제

4. 삭제

5. 삭제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---  
-----  
-----  
-----대구광역시달서구-----  
주민등록이 되어-----  
-----  
-----국가보훈부장관이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지원사업)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삭 제

2. 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

3. (생 략)

제5조(지급신청) ① 삭 제  
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주민 등록을 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
제4조(지원사업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2. ----- 20만원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급신청)  
② -----  
-----  
-----  
1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4조(지원사업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2.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급신청)  
② -----  
-----  
-----  
1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를」 제13조를 준용한다.  
다만, 같은 법 제13조에  
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  
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  
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-----.  
-----  
-----  
---장제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-----.  
-----  
-----  
---장제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